

수원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1나919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8. 10 선고 2021나91940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9. 1 선고 2019가단19268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

담당변호사 정지석

변론종결 2022. 6. 22.

판결선고 2022. 8. 10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9. 1. 선고 2019가단19268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2019. 2. 18. 체결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12호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제4조 기재 5억 원 지급약정 중 40,943,237원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0,943,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‘2. 고치는 부분’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 “④ 협의이혼 성립일인”부터 아래에서 3째 줄 “되어야 한다.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④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9. 4. 17. 기준 D의 소극채무는 241,452,000원인데,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부 및 자녀들의 생계유지 및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.』

제1심판결 6쪽 7째 줄 “그런데”부터 11째 줄 “타당하다.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그런데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9. 4. 17. 기준으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합계액이

236,254,042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에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위

적극재산보다도 263,745,958원(= 5억 원 - 236,254,042원)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,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파탄에 D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D의 혼인 파탄에 있어서의 책임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D에게 피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 중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그 전체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』

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7째 줄 “채권자가”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데,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40,943,237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, 위 40,943,237원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약정으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보전채권인 40,943,2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40,943,2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안좌진, 판사 이혜미